

태양광발전 조달청 나라장터 우수조달물품 지정취소 불복 행정소송: 대전고등법원 2023.

4. 20. 선고 2022누12430 판결



1. 사안의 개요

(1) 건물벽 외장형 태양광발전 패널 조달청 나라장터 우수조달물품, 우수제품 지정신

청 심사 후 지정 등록

(2) 경쟁업체의 이의신청, 소명자료 제출, 기술심의회 심사 지정취소 판단

(3)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기준 미달 이유로 지정취소 통지

2. 판결요지 - 우수조달물품 지정 취소 적법

(1) 조달사업법 시행령은 조달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'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'에 대하여 ① 특허법에 따른 특허발명, 실용신안법에 따른 등록실용신안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등록디자인을 실시하여 생산한 물품(제30조 제1항 제1호 가목)에 해당하거나 신기술 적용 물품, 우수품질 물품, 환경친화적 물품 또는 자원재활용 물품 등 법령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인증하거나 추천하는 물품(나목)에 해당하고 ② 기술의 중요도 및 품질의 우수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(2) 이 사건 규정은 제3조에서 우수조달물품 신청 물품의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면서, 제14조 제1항에서 우수조달물품의 규격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① '우수제품의 세부품명과 동일한 경우', ② '지정 당시 기술소명자료 및 품질소명자료에 부합하도록 규격서가 작성된 경우', ③ '우수제품 지정규격과 유사한 규격인 경우'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(3) 우수조달물품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의 내용 -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의 요건: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이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인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

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(대법원 2002. 2. 5. 선고 2001두5286 판결 등 참조).

(4) 이 사건 추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.

(5) 이 사건 물품은 건축물 지붕의 외장재를 대체하는 성능을 보유하여야 하는 BIPV 임에도 불구하고, 그러한 건축물 외장재로서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였고, 실제로 그러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.

(6) 그럼에도 이 사건 추가 지정을 취소하지 아니한다면, 이 사건 물품은 종래와 마찬가지로 우수조달물품으로서 다른 BIPV 제품 사이에서 성능상 비교우위를 점하게 되고, 이로 인하여 다수의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일반 기업 등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널리 판매가 이루어지게 된다.

(7) 이 사건 물품이 '우수조달물품'으로서 BIPV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게 된다면, 건축물 외장재로서의 성능이 입증된 BIPV 제품이 아니라, 건축물 외장재로서의 성능이 입증되지 아니한 제품이 상대적으로 다수의 건물에 설치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.

- (8) 이러한 결과는 그러한 물품이 설치된 건물의 소유자와 점유자는 물론이고, 건물
을 출입하는 공중의 건강(안전)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
수 있다.
- (9)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이 BIPV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게 됨으로써 공중의 건강
(안전) 및 재산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이 사건 추가
지정을 취소할 필요성이 인정되고, 이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의 의미 또
한 중대하다고 판단된다.
- (10) 조달사업법에 따른 우수조달물품의 지정은 해당 업체에게 경쟁입찰이 아
닌 수의계약에 따라 국가기관 등에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
으로서 해당 업체에 대하여는 상당한 혜택인 반면, 동종의 물품을 제조·판매하는
업체들에 대하여는 경쟁입찰을 통해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성
격을 지니게 된다.
- (11) 이 사건 물품은 우수조달물품의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음에도 관
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의 대상이 될 수 있고, 결국 동종 경쟁업체가 경쟁
입찰을 통하여 이 사건 물품 관련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축소 내지 박탈하는 결
과를 초래할 수 있다.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써 위와 같이 불합리한 상
태를 해소하는 것은 우수조달물품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

서 그 공익적인 의미가 크다고 봄이 타당하다.

첨부: 대전고등법원 2023. 4. 20. 선고 2022누12430 판결

국책과제, 행정소송, 행정심판, 이의신청, 집행정지, 민형사소송, 법률자문, A~Z 수행경력

T. 02-591-0657 E. kkh@kasanlaw.com H. www.kasanlaw.com